「석탄채굴·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」 추진상황

2021. 12. 3.

보건복지부
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
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

「석탄채굴 ·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」 추진상황

□ 추진 배경

○ 기금운용위원회(제6차, '21년 5월)는 **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**하고자 **'석탄채굴·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' 도입**을 의결

*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조항 신설, 국내·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 탈석탄 선언

○ 투자제한전략 도입을 위한 **준비단계**로써 대상산업의 범위 및 기준, 대상기업 선정방식 등 **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**을 위한 **연구용역 실시 결정**

□ 그간 추진 경과

○ **'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·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실무TF'** 구성·운영('21.6월~)

* 복지부, 국민연금연구원, 기금운용본부로 구성

○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('21.6월~)

*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, 일상감사, 공단 내부결재 등

○ **연구의 범위·내용, 연구 수행기관의 기준** 등 **제안요청서** 마련('21.11월)

- **(연구의 범위) 산업범위**(예 : 발전용·제철용 석탄 생산·판매, 석탄발전, 발전건설/장비생산 등), **대상기업** (예 : 석탄채굴·발전산업 관련 매출/이익 비중, 석탄채굴량, 석탄발전용량, 온실가스 배출량 등)
- **(참가업체 기준)** 기업경영분석에 고도의 전문성 보유 여부(회계법인, 컨설팅 전문기업 등)
- **(용역기간)**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
- **(예산)** 280백만원

○ 연구용역 사전설명회(11.4.),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(~11.12.), 제안서 기술성 평가(11.19.)

< 참고 : 연구용역 관련 주요 추진 일정(안) >

추진 내용	일 정
▪ 용역입찰 공고(10일) 및 제안서 접수	~11.12.
▪ 제안서 설명 및 평가(기술성 평가)	11.19.
▪ 평가결과 통보	11~12월
▪ 기술·가격 협상 실시	
▪ 용역계약 체결	
▪ 착수보고회의(전문위, 실평위, 기금위)	
▪ 중간발표회의(전문위, 실평위, 기금위)	’22.2~3월
▪ 전문가 회의, 공청회 개최	’22.2~3월
▪ 최종발표회의(전문위, 실평위, 기금위)	’22.4월
▪ 연구용역 수행	’21.12월 ~ ’22.4월
▪ 검수위원회 실시 및 인쇄	’22.5월

□ 연구용역 주요 내용

○ 석탄채굴·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**국내·외 동향 및 사례 조사**

- 석탄채굴·발전산업 관련 **국내·외 탄소배출 규제 현황** 등 조사, 동 규제가 **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**

- **주요 국내·외 기관투자자**의 석탄채굴·발전산업 관련 투자제한전략 **적용 사례 조사**

○ **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** 등을 통한 **이해관계자 의견수렴**

○ 석탄채굴·발전산업의 **범위·기준**과 **대상기업선정** 및 **투자제한방식 제언**

□ 향후 계획(안)

○ **‘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·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’** 구성·운영 (’21.12월~)

○ 연구용역 **중간발표회의** (전문위, 실평위, 기금위 / ’22.2~3월)

○ **관계전문가 회의, 공청회 개최**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(’22.2~3월)

○ 연구용역 **최종발표회의** (전문위, 실평위, 기금위 / ’22.4월)

○ **석탄채굴·발전산업**에 대한 **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** 수립 (’22년~)

- **자산별 이행시기, 성과평가 기준**(벤치마크지수) 등 **세부사항 결정**

참고 1 **「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」 주요내용 발췌**

※ 2021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('21.5.28.) 의결안건

Ⅱ. 추진 방안

2 석탄채굴·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시행방안

○ **(절차)** 준비기간, 기금운용 수익성, 시장 영향, 기업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**선언·도입준비·자산군별 시행** 등 **단계적으로 적용**

- **(1단계) 기금운용위원회**에서 「국민연금기금 **탈석탄 선언**」 **의결**
  - · **국민연금기금**에 **투자제한전략을 도입**하고, **우선적으로 석탄채굴·발전산업에 적용할 것**을 결정
  - ·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**대외적으로 공표**
- **(2단계)** 대상 산업의 범위 및 기준, 대상 기업 선정방식 등 **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**을 위한 **연구용역 실시** ('21.하, 잠정)

  ※ 투자정책전문위·수탁자책임전문위 등에 **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환류(피드백)** 과정을 거쳐 **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계획**
- **(3단계) 연구용역 결과 반영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**하여 **단계적 시행방안*** **마련,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** ('22.상, 잠정)

  * **기금의 수익성, 시장에 미치는 영향** 등 고려하여 준비 과정 이후, **국내시장**에는 단계적 축소 등 **점진적 적용**, **해외 시장**은 **즉시 시행**

  ※「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·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」 수립을 위한 TF 구성·운영 (복지부, 기금운용본부, 국민연금연구원, 전문가 등)

Ⅲ. 향후 계획

○ **석탄채굴·발전산업 범위 및 기준(안)** 등 마련을 위한 **연구용역 실시** ('21.하, 잠정)

○ **「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·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」 TF 구성·운영** ('21.하~)

○ **투자제한전략 단계적 시행방안** 수립 (~'22.상, 잠정)

- **자산별 이행시기, 성과평가 기준**(벤치마크지수) 등 **세부사항 결정**

참고 2 **국민연금기금 탈석탄 선언문**

신종 감염병인 **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**은 **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기금운용에 있어 ESG**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**를 고려한 책임투자의 중요성**을 동시에 일깨우고 있습니다. 이에 **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**는 **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, 석탄채굴·발전산업**에 대한 **투자제한전략을 도입**할 것을 선언합니다.

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**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, 주요 연기금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주목**하고 있습니다. **기후위기**는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, 어려운 이웃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**모든 인류의 삶을 위협**할 것입니다.
이러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**전 세계**가 **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**하고 있습니다. **미국, 유럽(EU)** 등 주요국들은 **탄소 국경세 도입**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, **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금융기관**에서 **친환경 기업 위주**로 **거래와 투자를 제한**하려는 **움직임이 확산**되고 있습니다.

기후변화와 강화되고 있는 **국제환경규제**에 대비하여 **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**은 **탈석탄 운용정책을 선언**하고, **위험관리측면**에서 **기금운용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**하고자 합니다.
우선, **탈석탄 선언을 시작**으로 **국내·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.** 다음으로, 투자제한전략 적용을 위한 **준비단계**로써 **단계별 시행방안**을 수립하겠습니다. **단계별 시행방안은 대상 산업의 범위·기준, 대상 기업의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**를 수행하고, **연구 과정**에 **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화**하겠습니다.

국민연금기금은 **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**로서 **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**과 **지속 가능한 사회**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아울러, **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**에 **적극적**으로 **참여**하고 **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**에 **선도적 역할**을 수행하겠습니다.